



## 안전한 환경

## 보고하는 법

### 보고에 대한 안내와 절차

#### **누가 보고를 해야 하는가?**

누구나 아동 학대에 관한 의심이나 정보가 있으면 보고를 해야 합니다.

교구의 모든 직원(직원 및 자원 봉사자 포함)과 의무적인 보고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혹은 아동 학대에 관한 의심이 되는 모든 경우에 보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 1) 아동 학대: 전문적이나 직업상의 의견으로 아동 학대가 행해지고 있고 또는 이것이 방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2) 신체적, 정신적 또는 인식/인지력의 장애자에게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이 경우에는 학대를 받는 이의 연령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3) 아동 외설사진(porno): 아동 외설사진은 교구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 성 학대의 다른 형태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발견되는 경우 반드시 즉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교구의 직원이 아닌, 아래에서 명시된 다른 이들도, 그들의 직책상, 법에 의하여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교사; 학교 카운슬러; 간호사; 운동 트레이너; 성직자(단, 고해성사를 통해 가해자의 학대나 방치를 알게 된 경우는 제외); 도서관 사서; 어린이들을 돌보는 곳에서 일하는 모든 고용인; 어린이들의 조직된 활동을 주관하는 곳에서 일하는 성인; 아동 보육원, 탁아소, 혹은 아동들을 위한 봉사기관에서 일하는 직원, 담당자 혹은 자원 봉사자.

#### **성추행이 의심되는 경우 보고하는 방법**

주교관이나 사법 기관에 보고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용하십시오.

#### 1. 사법 기관에 먼저 보고를 해야합니다.

라스베가스 경찰(비응급 번호: 311 또는 응급번호: 911)같은 시민 당국에 먼저 보고하십시오. 아동 보호 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 이하 "CPS")에 보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CPS 주요 전화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락카운티(Clark County): 702-399-0081

\*일라이(Ely): 775-289-1640

\*퍼롬(Pahrump): 775-727-8497

\*토노파(Tonopah): 775-482-6626

\*클락카운티 외부 지역(Outside of Clark County): 1-800-992-5757

•보고를 받는 담당자의 배지 번호 또는 “P”번호(혹은 다른 신원 정보)를 반드시 알아 두십시오.

•보고를 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당국에게 제공 하십시오: ①어린이의 이름과 주소, 부모의 이름과 주소,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의 이름과 주소 ②어린이의 나이 ③어린이가 얼마나 보호가 필요한가, 어린이가 어떻게 의존하고 있는가, 어떠한 학대 혹은 이에 대한 방치를 하고 있으며, 그 정도는 어떠한가, 이에 대한 같은 사례가 전에도 있었는가(알고 있는 경우) ④ 학대나 방치를 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⑤ 조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정보 ⑥ 아동 외설사진 (porno) 또는 이와 유사한 자료를 소유하고 있거나 분배하는 자.

이러한 정보는 연령과는 상관 없이 신체적, 정신적 혹은 인지/인식 능력이 부족한 장애자의 학대를 보고할때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 2.다음과 같은 경우는 교구로 추가 보고를 즉시 하셔야합니다.

교회나 이에 속한 부처에서 성직자, 부제, 교구의 고용인 혹은 자원봉사자들이 성추행을 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는 사법 기관에 보고를 한 후 교구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합니다.

•보고를 하실 곳:

Safe Environment Coordinator and Victim’s Advocate 의 담당자인 Ron Vallence:

전화번호: (702) 235-7723 e-mail: [assistmin@dioceseoflasvegas.org](mailto:assistmin@dioceseoflasvegas.org)

•Safe Environment Coordinator and Victim’s Advocate, 하루 24 시간이 통화가 가능 한 전화 그리고 e-mail 은 교구에 속한 학교, 교회와 교구사역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구에도 사법기관에 보고하신 동일한 정보와 보고를 하신 사법 기관 담당자의 신원(이름과 배지번호, ‘P’번호)을 알려주십시오

•교구에 보고를 했다고해서 경찰이나 아동보호 기관등의 사법 기관에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며, 보고를 해야하는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반드시 사법 기관에 먼저 보고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교구에 속한 교회나 사역지역에서 아동의 학대가 성추행이 아닌 경우와 가해자가 성직자, 부제, 교구 고용인 혹은 자원봉사자가 아닌 경우는 적절한 아동보호 기관이나 사법 기관에 위에 명시된 전화번호를 참고하시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3.신속한 조사

저희 교구의 성직자, 부제, 교구의 고용인 혹은 자원 봉사자에의해 아동학대나 성추행이 행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면, 라스베가스교구와 교구의 대행자는 이에 대해 즉시 조사를 시작하고 고발된 피고인은 고발된 혐의에 합당한 징계를 받게됩니다. 라스베가스 교구는 이러한 모든 보고를 심각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공정하고 진실된 보고를 하시는 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교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익명으로 고발되는 보고는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진술의 정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하시는 분과 다시 한번 직접 대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보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확실하지 않을때**

어떤 특정한 행위가 당국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 보호 서비스(CPS)의 website 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지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이나 주위의 상황이 알려져있거나 혹은 어떤 특정인이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분별력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실이나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동일한 기간내에 보고를 해야한다는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에는 보고를 해야한다. Nev. Rev. Stat. §432B. 121(2011)을 참고하십시오.

### **OUTREACH**

고발을 받으면 라스베가스 주교나 그의 대행자(들)는 추정된 피해자와 혹은 그의 가족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는 목회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의 죄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치료 및, 혹은 기타 사회 봉사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교구의 추가 지원은 각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